

시신기증에 필요한 서류

가. 시신기증 유언서(시체의 해부, 보존, 연구, 제공 동의서)
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.

나. 시신기증인 가족동의서(대학 소정 양식)
모든 자녀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자녀분들이 없을 시 모든 형제
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다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유언인과 동의하여 주신 분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
니다.

상담 및 접수

-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시신기증에 대한 상담 및 안내책자와
필요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02-2228-1661~3 / 평일 08:30 ~ 17:30

- [우편접수] (03722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-1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
- [방문접수] 신촌 연세의료원 원내 임상의학연구센터 건물 1층
수술해부교육센터
(암센터 1층 안내데스크 또는 본관 3층 안내데스크에
제출해 주셔도 됩니다.)
- 접수가 끝난 후 등록되시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기증 등록이
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
- 등록증 뒷면에는 문의하실 전화번호(02-2228-1661~3)와 연락가능
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습니다.

아름다운 나눔

시신기증에 대해
알려드립니다

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
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

시신기증이란



시신기증은 자신의 사후의 몸을 의학교육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러한 기증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
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가 되는 첫걸음은 인체구조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. 또한 인체의 구조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진단방법과 치료기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사후에 기증하신 시신은 이러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귀히 쓰이게 되어, 한 분의 소중한 시신기증이 의학 발전의 귀한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우리 후손의 건강한 삶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.

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동의에 의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하시겠다는 유언을 하시면 시신기증 유언인으로 등록이 되고 돌아가신 후 시신 기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시신기증 후 교육과 연구에 사용된 후 화장하여 유가족들에게 분골을 돌려 드리거나 완전위탁 하실 경우에는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에 산골 하여 드립니다.



시신기증 가능 거주지역

서울, 경기 고양, 파주 지역만 가능합니다.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 사망하시면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돌아가신 후 필요한 서류

1) 고인이 치료받던 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

고인이 치료받던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그 병원에서 **사망진단서**를 받으셔야 하며 대학에 반드시 1부를 주셔야 합니다.

2) 자택에서 사망하신 경우

택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**법령**에 의한 **사체검안**을 하게 됩니다(**사망진단서**와 **시체검안서**는 **법적**으로 **동일한 효력**을 갖습니다).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의사에게 **시체 검안서**를 **발급**받으신 후, **대학**에도 **1부**를 **제출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사망 후 기증절차



의료기관에서 사망하신 경우



사망진단서를 발급 완료 후,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연락



연락처는 등록증 뒷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.



그 외 장소에서 사망하신 경우



119에 신고



기증이 이루어지게 되면

기증인

고인
운구

교육/연구



화장,
납골 인도

유가족

장례식

사망신고
후 주요
서류 발송



말소자 초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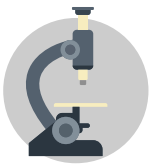
고인 의과대학 이동

사망 장소로
담당자 이동



담당자 유가족

(근로기준법 법률 제 16270호 정부시책 의거하여 공휴일
그리고 22:00시부터 08:00시까지는 기증이 불가능하오니
양해부탁드립니다. 22:00 이전이나 08:00 이후에 연락 주시기
바랍니다.)



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의 절차

화장

의과대학 교육과 임상 연구가 다 끝나고 나면 고인을 화장하게 됩니다. 유가족께서는 화장 예정일 2~3주 전에 연락을 드립니다.

시신기증 종료

화장을 마친 고인의 분골은 유가족께서 인도하며 모든 시신기증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. 고인의 최종안치장소 (예 : 자연장) 등은 유가족께서 별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.

만약 모든 절차를 대학에 일임해 주시면 대학 관계자가 유택 동산(서울시립승화원에 위치)에 산골 하여 드립니다.



시신기증이 어려운 경우

- ① 고인이 생전에 시신기증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
- ② 유언등록인이라도 유가족이 반대하는 경우
- ③ 사망 시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
- ④ 사고사(자살, 교통사고, 추락사)인 경우
- ⑤ 법정 전염성질환으로 사망하신 경우
- ⑥ 외상이 현저하거나, 체형이 학생 교육에 임하기 힘든 경우
- ⑦ 교육을 하기 힘든 상태(몸이 굽거나 마르신 경우)
- ⑧ 외국 국적인 경우

자주 하시는 문의사항

질문)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을 같이 할 수도 있나요?

답변)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은 조금 다릅니다. 시신기증은 연구가 주된 목적이며, 장기기증은 장기가 필요한 환자들 중 필요한 부분을 이식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목적으로, 주로 살아계실 때에 하실 수 있습니다.

장기기증에 대한 안내
국립장기기증센터 02-2628-3602

질문) 동의해 줄 직계가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?

답변) 시신기증 가족동의서에서는 직계가족의 동의가 우선입니다.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혈연관계인 형제 자매 분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.

(가족관계증명서,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필요)
직계 및 방계의 가족이 없을 경우 기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.

